

<p>됩니다.</p> <p>4. 결의 및 답변요지 : 생략</p> <p>5. 토론요지 : 생략</p> <p>6. 심사결과 : 「원안가결」 (재석위원 13명, 출석위원 8명 전원일치)</p> <p>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</p> <p>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</p> <hr/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margin-top: 10px;"> <tr> <td style="width: 15%;">의안 번호</td> <td style="width: 15%; text-align: center;">620</td> <td style="width: 70%; text-align: right;">2000. 7. . 기획경제위원회</td> </tr> </table> <p>1. 심사경과</p> <p>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0년 6월 13일, 서울특별시시장 제출</p> <p>나. 회부일자 : 2000년 6월 15일 회부</p> <p>다. 상정일자 : 제1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(2000년 6월 28일 상정, 의결)</p> <p>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 : 기획예산실장 김우석)</p> <p>가. 제안이유 동작소방서 및 직할파출소와 119구조대 시설에 따른 운영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방직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.</p> <p>나. 주요골자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소방직공무원 정원 증원 : 99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현행) 4,881명 → (개정) 4,980명 ※ 총 계 99명 동작소방서 37명 직할파출소 47명 119구조대 15명 <p>다. 참고사항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관계법규 :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</p> <p>※ 제21조(정원의 규정)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없음.</p> <p>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김동수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본 개정조례안은 동작소방서가 신설되어 2000년 8월 개정하게 됨에 따라 소요인력 	의안 번호	620	2000. 7. . 기획경제위원회	<p>99명을 증원하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동 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를 15,661명에서 15,760명으로 하고, 부칙 제2조에 규정된 2000년 7월 31일까지의 정원총수(표1)는 16,369명에서 16,468명으로, 2001년 7월 31일까지의 정원총수(표2)는 16,019명에서 16,118명으로 각각 조정하며, - 동 조례 제2조와 부칙 제2조의 표1, 표2의 본청·소방학교·소방서 등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각각 4,881명에서 4,980명으로 하는 것으로 <p>○ 신설된 동작소방서는 정원을 109명(본서 37명, 직할파출소 53명, 119구조대 19명)으로 책정하여 99명은 순증원하고 부족한 원중 10명은 타 소방관서에서 보충하는 것으로서 기존 소방서의 평균인력이 138명(본서 61명, 직할파출소 58명, 119구조대 19명)임을 감안할 때 금번 정원조정은 별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.</p> <p>4. 결의 및 답변요지 : 생략</p> <p>5. 토론요지 : 생략</p> <p>6. 심사결과 : 「원안가결」 (재석위원 13명, 출석위원 8명 전원일치)</p> <p>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</p> <p>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</p> <hr/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margin-top: 10px;"> <tr> <td style="width: 15%;">의안 번호</td> <td style="width: 15%; text-align: center;">621</td> <td style="width: 70%; text-align: right;">2000. 7. . 기획경제위원회</td> </tr> </table> <p>1. 심사경과</p> <p>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0년 6월 13일, 서울특별시시장 제출</p> <p>나. 회부일자 : 2000년 6월 15일 회부</p> <p>다. 상정일자 : 제1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(2000년 6월 28일 상정, 의결)</p> <p>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 : 기획예산실장 김우석)</p> <p>가. 제안이유 하천법의 전문개정과 공중위생관리법의 제정 및 자동차관리법의 개정 에 따라 신설된</p>	의안 번호	621	2000. 7. . 기획경제위원회
의안 번호	620	2000. 7. . 기획경제위원회					
의안 번호	621	2000. 7. . 기획경제위원회					